

『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최근 「도로교통법」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‘개인형 이동장치’가 법제화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정의규정을 상위법률

에 따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